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Version 1.1



경기도 성남시  
분당구 판교로 310  
SK 케미칼 빌딩

---





Title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

Version #: 1.1

Issue Date: 2017/12/22

## 목 차

제1장 총칙 .....	4
제1조 (목적) .....	4
제2조 (적용 범위) .....	4
제3조 (권한) .....	4
제2장 구성 .....	4
제4조 (구성) .....	4
제5조 (위원장) .....	5
제3장 회의 .....	5
제6조 (소집권자) .....	5
제7조 (소집절차) .....	5
제8조 (결의방법) .....	6
제9조 (부의사항) .....	6
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 .....	6
제11조 (통지의무) .....	6
제12조 (의사록) .....	7
제4장 보칙 .....	7
제13조 (사무국) .....	7
제14조 (규정의 개폐) .....	7
부칙 .....	8

	Title	
	<b>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</b>	
	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	Version #: 1.1   Issue Date: 2017/12/22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SK케미칼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.)의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 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 (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의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.

## 제2장 구성

### 제4조 (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 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### 제5조 (위원장)

-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<개정 2017. 12. 22>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3장 회의

### 제6조 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 제7조 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5일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

Title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

Version #: 1.1

Issue Date: 2017/12/22

## 제8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 
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② 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원장과 위원만 가진다. 단, 위원회 위원이 아닌 각 이사는 의결권은 없으나,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## 제9조 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외이사후보의 추천
2.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## 제10조 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임·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 제11조 (통지의무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3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

Title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

Version #: 1.1

Issue Date: 2017/12/22

## 제12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4장 보칙

## 제13조 (사무국)

이사회 담당 사무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## 제14조 (규정의 개폐)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


Title

#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규정

Document #: SK케미칼-기본규정

Version #: 1.1

Issue Date: 2017/12/22

## 부칙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7. 12.22 개정>

### 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